

투 자 설 명 서

삼성 Water Infra 듀얼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제1호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 Water Infra 듀얼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제1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Water Infra 듀얼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탁 명 : 삼성 Water Infra 듀얼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제1호
2. 투자신탁의 종류 : 파생상품투자신탁
3. 자산운용회사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4. 판 매 회 사 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상담가능 전화번호 : 1588-1771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07년 05월 일
6.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비치·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홍콩상하이은행 본·지점	www.kr.hsbc.com
삼성투자신탁운용(주)	www.samsungfund.com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투신운용

SAMSUNG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2.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 | |
|---------------|---|
| 1. 명칭 | 삼성 Water Infra 듀얼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제1호 |
|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1개월
다만, 각 조기상환시기(2007년11월16일, 2008년05월16일, 2008년11월18일, 2009년05월18일, 2009년11월18일)에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기상환 일까지를 신탁계약기간으로 함 |
| 3. 종류 | 파생상품투자기구, 단위형, 개방형 |
| 4. 자산운용회사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7년 05월 일 예정 |
| 6. 수탁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
| 7. 해지사유 |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II. 투자정보

- | | |
|------------|---|
| 1. 투자목적 | S&P Global Water Index 및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연계된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2. 주요 투자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 대부분을 글로벌 “물”관련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S&P Global Water Index와 글로벌 “인프라” 관련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의 성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지수 수익률에 연계된 수익을 추구합니다. - 매 6개월 조기상환결정일에 누적수익률이 조기상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조기상환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상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투자전략’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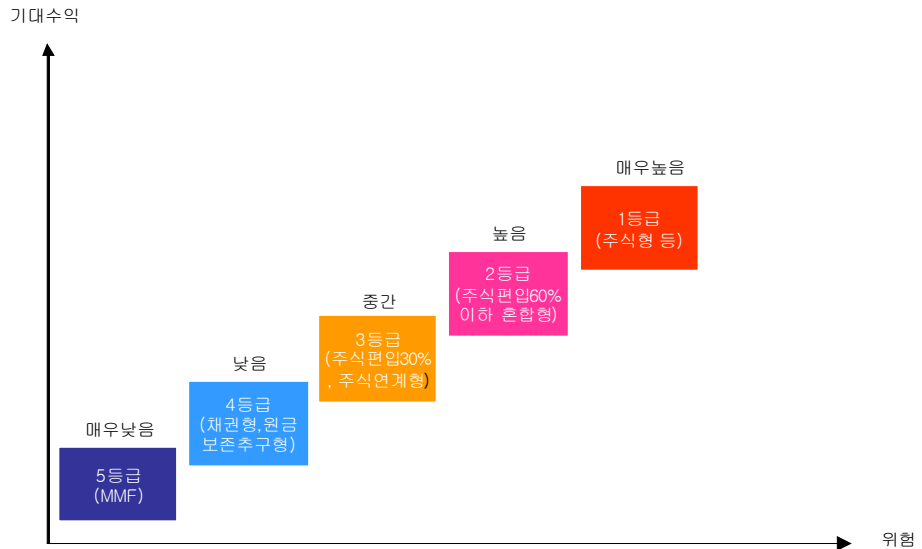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주요위험은 아래와 같으며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 회사의 신용 위험 및 투자위험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유동성위험 / 장외파생상품 자동상환 또는 계약조건 변경 위험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연기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S&P Global Water Index 및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지수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수익을 얻고, 하락하더라도 원금 보존(원금의 95%수준)을 추구하므로 5등급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지수 변동에 따른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기준]



5. 투자실적 추이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해당사항 없음
- 나. 연평균 수익률 추이 해당사항 없음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5%	매입시
환매수수료	3년1개월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5%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최초보수계산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22%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67%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1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¹⁾	순자산총액의 연 0.01%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00%	

(2) 최초보수계산기간이 아닌 경우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1%	최초보수계산기간 이후 매 6개월간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1%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1%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¹⁾	순자산총액의 연 0.01%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013%	

註) 1. 기타비용은 투자증권 매매거래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예상수치**입니다.

<기타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1. 투자증권등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판매수수료	선취수수료	1,000만원 * 1.5% = 150,000원	

보수·비용	그 이후	650	3,250
	합 계	100,650	103,250

註)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수수료율 및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율>

- (1) 개인투자자의 경우 : 소득의 15.4%(주민세 포함)
- (2) 일반 법인의 경우 : 14% (비과세 법인의 경우 없음)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의 분배

- 1. 매입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매입가격 및 매입방법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 공고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7시[오후5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15시[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 합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환매 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환매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11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	...	제5영업일	제6영업일	...	제10영업일	제11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3시] 경과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금액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3년1개월 미만 **환매금의 5%**입니다.

□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환매

- (1)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마.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3)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가.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급을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유보하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1)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일정 시일이 경과한 이후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S&P Global Water Index 및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연계된 만기 3년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 장외파생상품이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도 중도에 상환됩니다.

※ S&P Global Water Index :

- 전세계 “물”관련 기업 50개로 구성된 지수. 단, 개별기업의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수는 두 개의 섹터(Sector)로 나누어짐
- 지수 내 개별기업의 비중은 지수구성 섹터의 비중 및 각 섹터 내 비중을 고려하여 부여됨
- 지수편입조건은 ① 시가총액이 최소 USD 250 Million 이상, ② 최근 3개월 일일 거래량 평균 10,000 Shares 이상, ③ 편입종목은 반드시 선진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어야 함

※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

- UBS Global Infrastructure & Utilities Index의 서브 인덱스로서, 현재 37개의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유동주식수 기준 지수 임
- Infrastructure는 크게 4 개의 섹터로 나누어짐 (교통, 에너지, 물, 통신)

위의 기초자산 수익률은 fiance.yhoo.com 및 당사 홈페이지인 www.samsungfund.com(메인화면-리서치-해외파생펀드 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한 신탁재산 외에는 단기대출 등의 자산으로 운용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남은 금액은 단기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시장금리 변동 리스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3) 투자대상 장외파생상품의 발행 내용

① 거래상대방 : UBS AG, LONDON BRANCH

② 개요

기초자산 : S&P Global Water Index 및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

만기 : 3년

4) 투자신탁의 손익구조

① 매 3개월 관측일(총 12)에 기초자산 평균수익률 및 누적수익률을 산정하고, 매 6개월 조기상환결정일에 다음의 조건에 준하여 조기상환 여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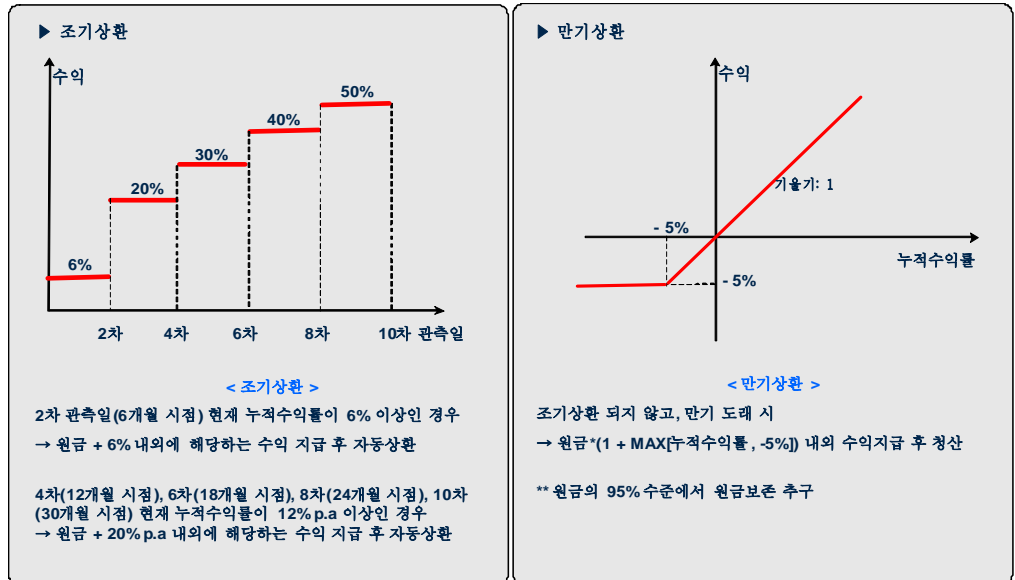
결정합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조기상환 조건	누적수익률 >=6%	누적수익률 >=12%	누적수익률 >=18%	누적수익률 >=24%	누적수익률 >=30%
조기상환 금액	원금*106% 내외지급	원금*120% 내외지급	원금*130% 내외지급	원금*140% 내외지급	원금*150% 내외지급

- 기초자산 평균수익률(i) = (Water Index 분기수익률(i) + Infrastructure Index 분기수익률(i))/2
- 기초자산 분기수익률(i) = 해당분기 기초자산 평균 수익률(i)은 최대 5%, 최소 -8%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초자산 누적 수익률(i) = ∑ (기초자산 분기 수익률(i)), i=1,2,3,...12

② 3년 만기 상환 시(만기시점까지 조기상환 되지 않을 경우)

: 원금 + 원금*[MAX(누적수익률(12), -5%)] 내외 지급(원금의 95% 수준에서 원금보존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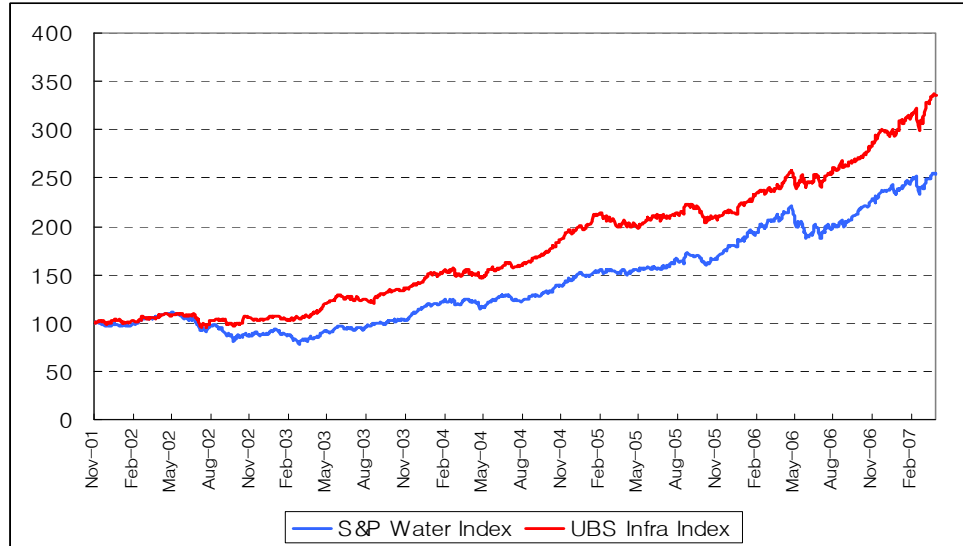


5) 기준가격 결정일 및 지급일

	3개월단위의 관측일	지급일
1번째	2007년08월08일	
2번째	2007년11월08일	2007년11월16일
3번째	2008년02월05일	
4번째	2008년05월07일	2008년05월16일
5번째	2008년08월07일	
6번째	2008년11월10일	2008년11월18일
7번째	2009년02월10일	
8번째	2009년05월08일	2009년05월18일

9번째	2009년08월10일	
10번째	2009년11월10일	2009년11월18일
11번째	2010년02월09일	
12번째(최종)	2010년05월10일	2010년05월18일

[참고-기초지수 과거추이]



- (1) 대상 기간 : 2001년 11월 16일 ~ 2007년 4월 12일
- (2) 기초지수 : S&P Global Water Index /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
(’01년 11월 16일 지수를 100 으로 가정 시)
- (3)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상환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폐지등으로 중도상환시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 회사의 신용 위험 및 투자위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원리금 전체를 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 달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p>※ 거래상대방 : UBS AG, LONDON BRANCH [본 투자설명서 작성시점의 신용등급 : S&P 기준 AA+]</p>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p>투자신탁재산을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S&P Global Water Index 및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기초지수중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는 Customer Index로 지수 발표자에 의해 지수 선정방식 및 폐지될 수 있습니다.</p>
유동성위험	<p>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다른 유가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환매에 대응하여 환매금을 마련하는 등의 사유로 장외파생상품을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p>
장외파생상품 자동상환 또는 계약조건 변경 위험	<p>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에 있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이 자동상환되거나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조건 및 상환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 또한 조기종료되거나 수익자의 권리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제·개정, 법원 또는 감독당국의 해석 등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불법하게 되거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등 발행회사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발행회사의 휴업, 파업 등으로 인하여 거래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공개매수, 국유화, 파산, 상장폐지 등의 경우 (5)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증자, 감자, 배당, 분할, 병합 등 실질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관련 거래소 등에서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 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이 증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가격이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 (7) 관련 거래소 등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p>지수인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의 거래가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p> <p>(8) 관련 거래소 등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p> <p>(9) 관련 거래소 등에서 정규매매마감시각 이전에 거래를 마감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의 증가가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발행회사 등의 헷지거래가 곤란하거나 헷지비용이 증가하는 경우</p> <p>(10) 외환시장의 교란 또는 감독당국의 통제 등으로 인하여 환전, 자금의 해외 이전 등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p> <p>(11)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및 자산운용회사가 기타 국내의 금융시장 관행을 고려할 때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p>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및 불이행	<p>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이 투자신탁은 유럽의 특정지수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총 환매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p>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장외 파생상품	90% 이상	<p>○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거래 중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를 제외한 거래로서 각 호의 손익구조를 모두 만족하는 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P Global Water Index 및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결정될 것 2. 투자원본 이외의 추가적인 손실을 초래하지 아닐 것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운용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장의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 (www.samsungfnd.com)· 판매회사 (www.kr.hsbc.com)·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 기준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 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3층
 (02-3774-7600)

회 사 연 혁

일자	연혁
1998. 9.15	설립등기 (납입자본금 300억원)
10. 1	삼성투자신탁증권으로부터 영업권 양수 (수탁고 8조)
11. 2	영업 개시
12. 4	삼성그룹 계열사 편입 (공정거래위원회)
1999.12.29	수탁고 10조 달성 구. 삼성투자신탁운용과 합병 (납입자본금 632억, 관리자산 20조)
2000. 3. 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3.30	회사상호 변경 등기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 → 삼성투자신탁 운용)
2001. 1. 9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11. 5	연기금 투자플 주간 운용사 선정
2002.10.14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2. 주요업무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의 책임이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항 목	대차대조표		항 목	손익계산서	
	'06.3.31	'05.3.31		'06.3.31	'05.3.31
유동자산	117,291	100,850	영업수익	64,794	57,404
고정자산	37,797	38,264	영업비용	33,536	32,512
자산총계	155,088	139,115	영업이익	31,258	24,892
유동부채	7,437	5,667	영업외수익	128	989
고정부채	2,301	1,381	영업외비용	25	28
부채총계	9,738	7,047	경상이익	31,361	25,853
자본금	93,180	93,18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52,170	38,887	특별손실	-	-
자본조정	-	-	세전순이익	31,361	25,853
자본총계	145,350	132,067	당기순이익	22,601	17,946

4. 운용자산규모

(2007년 01월 31일 기준, 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 계
수탁고	31,625	21,882	45,720	69,807	13,688	-	7,902	-	176,936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및 기타운용 현황(2007.02월 말일 기준)

- 해외투자팀 운용

성명	출생년도	주요경력	운용구분	운용펀드수	운용자산(억원)
이찬석	1965	91. 1~ 99.12 삼성생명 해외투자 00. 1~ 04. 7 삼성생명 런던투자법인	공동	34	7,936.7
홍의석	1967	-1997.07~1999.03 대신증권 - 1999.10~2001.01 동부화재 - 2001.01~2003.05 교보투자신탁운용 운용역 -2003.07~2005.10 세종증권 차장 -현 삼성투신 해외투자팀		13	7,749.8
강성호	1975	02. 7 ~ 03.2 동양증권 금융상품운용 03. 2 ~ 03.5 동부투신운용 채권운용 03. 5 ~ 05.4 외환코메르쯔투신운용 전략운용본부		6	365
배현주	1976	- 00. 1 ~ 00.6 HSBC		17	10,754
계			단독	-	-
			공동	70	26,806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판매회사의 개요

가. 판매회사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나.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1588-1771)

다. 연 령

일 자	연 령
1986	미들랜드은행 합병
1998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지점 개설
2000	분당지점 개설, 서초지점 개설
2001	방배동지점 개설

2. 주요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수탁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1588-1771)
회사연혁	1986 미들랜드은행 합병
	1998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지점 개설
	2000 분당지점 개설, 서초지점 개설
	2001 방배동지점 개설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Ⅴ.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 채권평가회사명 및 주소 등

회사명	소재지	설립일	등록일	연락처
KIS채권평가(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2000.6.20	2000.6.30	02-3770-0400
한국채권평가(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2000.5.29	2000.7.1	02-399-3350
나이스채권평가(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43번지 대인빌딩 15층	2000.06.	2000.06	02-739-2545

□ 연 혁

KIS채권평가(주)

일 자	연 혁
2000. 06. 20	설립
2000. 06. 3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1. 01. 01	환경-KIS 채권지수 발표
2002. 07. 02	증권업협회-KIS-환경 기업어음지수 개발

한국채권평가(주)

일 자	연 혁
2000. 05. 29	설립
2000. 07. 0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2. 05.	벤처기업 선정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나이스채권평가(주)

일 자	연 혁
2000. 06	설립
2000. 0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1. 10	나이스채권지수(NICE Bond Index)발표

2. 주요 업무내용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VI.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에 관한 사항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기관과 계열관계에 있는 국내 금융기관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 국제적 관행에 따라 한국 이외의 국가가 재판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www.samsungfund.com)· 판매회사(www.kr.hsbc.com)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samsungfund.com)·판매회사(www.kr.hsbc.com)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장내·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 지표의 개요 및 위험 지표 공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지표 공시는 자산운용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합니다.

위험지표	설명	공시 주기
계약금액	파생상품 거래금액	파생상품 거래 후 익일까지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익이 발생하는 구간 설명	
시나리오별 손익 구조 변동	시장가격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의 최대손실 예상금액	매일

□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두 지수(S&P Global Water Index 및 UBS Global Infrastructure Index)의 누적수익률이 (-)인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손실 가능금액은 투자원금의 5%입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